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79

발의연월일: 2025. 2. 7.

발 의 자: 박용갑・박희승・조인철

정준호・복기왕・한민수

장철민 · 강유정 · 서미화

박수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(KS) 인증을 받은 제품 · 서비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그런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요건이 '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' 또는 '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'로 한정적이어서 KS인증 제품 ·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 · 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.

이에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S인증 제품 · 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 제품 ·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0조

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공공기관"을 "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"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"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 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
- 2.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
- 3.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 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 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"품질경영"이란 기업· <u>공공</u>	3 <u>공공</u>
<u>기관</u> • 단체 등(이하 "기업등"	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
이라 한다)이 고객이 만족할	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
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	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
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	<u>다)</u>
계적으로 품질을 계획·관리	
·보증·개선하는 등의 경영	
활동을 말한다.	
제20조(시판품조사 등) ① 산업통	제20조(시판품조사 등) ①
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	<u>다음 각 호의</u>
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	
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	
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	
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	
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
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	

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 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(이 하 "시판품조사"라 한다)을 하 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(이하 "현장조사" 라 한다)하게 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~ ⑤ (생 략)

- 1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경우
- 2.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
- 3.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 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